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0000호

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」 일부개정안(수정안) 제 행정 예고

1. 제정이유

「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」 일부개정안의 개정사항 중 별표2 품질시험 기준 부분의 현장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별표 2의 개정사항의 반영시점 명확화(부칙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, 정부세종청사 6-2동 국토
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
(전화 044-201-3580, 팩스 044-201-5553)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의
『정책자료-법령정보/입법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
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